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간건설공사의 물가변동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것과 달리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계약당사자간 이견 발생 및 수급인의 적극적인 물가변동 반영 요청에 제약이 있음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명확화(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하고, 조정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건설공사 물가변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23.10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기본사항(표준약정서 사용, 적용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해결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체결시 두 방법 중 선택하여 결정하지 않고 해당 문구를 계약조건으로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분쟁 해결방식 미합의에 따른 분쟁해결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미리 사전에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여 건설분쟁 해결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구체화(표지 및 제22조 개정)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물가변동 조정방식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민간건설공사 물가반영 활성화 기여

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 규정(표지 및 제22조의2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가 '23.10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기본사항(표준약정서 사용, 적용 예외사유 등) 등 규정

다.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협의 독려(제41조 개정)

건설분쟁 해결방식(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을 사전에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유도

3. 의견제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3일 수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효석, 전화 : 044-201-4597, 팩스 044-201-5546, 이메일 kimhs1110@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
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